

목회와신학연구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와신학연구소라 한다(영문표기 The Institute of Theological Studie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이하 '연구소'라 칭함).

제2조 (사무소)

본 연구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연구소의 목적은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개혁신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변하는 시대 속에서 신학을 연구하며 한국 교회, 사회, 역사를 변혁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고 미래의 선교적 지평을 열고 준비하는 데 있다.

제4조 (사업)

본 연구소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개혁신학 신학과 전통을 소개하고 연구, 발전시키기 위하여 스위스 개혁신학을 비롯한 타 지역 교회들과 신학 교류와 인사 교류를 갖는다.
2. 개혁신학 신학자료를 조사, 수집, 정리, 보관한다.
3. 장공 신학 사상과 그 이후의 신학을 평가, 정리, 계승하고 발전시켜 복음의 토착화와 민족개혁의 동력이 되게 한다.
4. 에큐메니컬 신학 및 타 종교와의 대화를 가지며 개혁신학 신학의 맥락에서 민중신학을 정리하고 발전시킨다.
5. 신학과 목회현장을 접목하기 위해 목회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6. 한국기독교장로회 연혁·정책·선언서(4대 문서)와 1987년 신앙선언, 교회선교사회선교·교회교육정책(제5문서) 및 각종 선교문서를 시대적 상황과 관련해서 분석, 평가하고 2000년대 선교방향을 모색한다.

7. 연구 활동, 연구 발표회, 연구 세미나, 공개 강연회,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8. 연구 성과물 및 연구 자료집 등을 총회 출판사를 통해 출판 보급한다.
9. 장학회를 설치하여 새 역사를 담당할 개혁신학 후진을 양성한다.
10. 그밖에 연구소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 (이사회)

본 연구소는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는 본 교단 인사 중에서 선임하되 총회 공천 18인(여성 1인 이상), 이사회 추천 이사 2인, 당연직 이사 2인(한신대 총장, 소장)을 포함하여 22인으로 한다. 그 임기는 4년이다.
2. 이사회는 추대로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명예이사는 이사회 언권을 가지며 연구소 운영과 연구 활동의 자문에 응한다.

제6조 (임원 및 선임)

본 연구소 이사회의 임원 및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 장 : 본회 이사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2. 부이사장 : 본회 이사의 과반수 참석과 다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3. 서 기 : 부이사장과 같다.

제7조 (감사)

본회 감사는 총회 감사가 한다.

제8조 (소장 선출)

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재직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임기는 4년이다.

제9조 (기획위원)

기획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0

인 내외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임 무

제10조 (이사회의 임무)

본 연구소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2. 소장 선출
3. 기획위원 선출
4. 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안 심의
5. 장학생 선발

제11조 (임원의 임무)

본 연구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 장 : 이사장은 이사회를 주재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부이사장 : 이사장 유고 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서 기 :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2조 (소장의 임무)

소장은 본 연구소를 관장하고 기획위원회를 주재하며 연구소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제13조 (기획위원의 임무)

동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연구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업계획
2. 연구소의 연간 활동 계획의 심의 및 평가
3.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연구소

제 14조 (직원)

본 연구소 직원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본 연구소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연구소를 총괄한다.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상임연구원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의 연구원을 상임으로 둘 수 있다.

3. 사무원

연구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약간의 사무원을 둔다. 소장이 임명하고 소장이 맡긴 업무를 담당한다.

4. 각종 부서를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제5장 회 원

제 15조 (가입)

연구소의 회원은 연구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이나 교회(단체)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제 16조 (구분)

연구소의 회원은 연구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연구회원은 연구소의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으로 한다.

2. 후원회원은 연구소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한다.

제 17조 (후원회)

연구소의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후원회원으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18조 (권리)

연구소의 회원은 연구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소에서 관장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19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총회 지원과 국내외 교회의 지원금과 찬조금, 출판 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7장 정관개정 및 효력발생

제20조 (정관개정)

정관 개정은 이사회의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의 결의로서 개정할 수 있다.

제2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 채택되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관례조항)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내규 및 일반규례에 따른다.

1991년 제76회 총회 실행위원회 제정
1992년 9월 제77회 총회 개정
2004년 9월 제89회 총회 개정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학박사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학박사원(이하 '박사원')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박사원은 목회자의 목회 지도력과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장소)

본 박사원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와신학연구소 내에 설치한다.

제4조(운영)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본 박사원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위임하여 운영하게 한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위원회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및 감사

제6조(재정)

박사원의 재정은 위원회 지원금, 등록금, 기부금, 후원금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재정)

재산의 관리는 위원회가 의결하여 처리하고 법규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의 구분 및 집행)

회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회계는 박사원장이 집행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1. 일반회계: 교육사업
2. 특별회계: 특별 기획사업

제9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

위원회는 총회에 예산과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감사)

박사원 운영의 감사는 위원회 감사와 총회 감사로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2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총회장, 부총회장(목사), 박사원 동문대표 2인, 목회와신학연구소 이사 2인, 박사원장, 박사원 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제13조(임기)

파송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

운영위원회 임원은 위원장과 서기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총회에

보고한다.

1. 박사원의 예산과 결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사항
4. 박사원 관련 제반 규칙에 관한 사항

제 16조(위원회 감사)

위원회는 총회 감사 1개월 전에 자체적으로 박사원의 운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사는 위원 2인으로 한다.

제 17조(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며, 회의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조직과 교직원

제 19조(조직)

박사원은 원장과 처장으로 조직하고,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처를 둘 수 있다.

제 20조(박사원의 장)

박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속한 목사
2. Ph.D., Th.D.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academic degree)를 소지한 자
3. 박사원 교수 경력을 소지한 자

제21조(부처 조직과 장)

1. 교무처: 학사와 교무 업무를 관장한다.
2. 총무처: 일반 행정과 재정 업무를 관장한다.
3. 처장은 박사원 교수로 하여금 겸임하게 한다.
4. 처장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교직원)

교직원의 구성과 임면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해 산

제23조(해산)

박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잔여재산의 귀속)

박사원을 해산하였을 경우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로 총회에 귀속된다

부 칙

1. (시행) 이 정관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제95회 총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2. (학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3. (시행세칙) 이 정관과 학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통상규칙을 준용하여 결의하며, 교과과정을 기본으로 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